

1. 소화기 설치공사

1. 소화기의 표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소방법규에 의해 발견하기 쉬운곳에 표식을 설치하되 적색바탕에 흰색으로 폭 8 cm 이상 길이 24 cm 이상의 판에 "소화기"라고 표시할것.

2. 소화기의 규격

소화기의 기술상 규격은 소방법규의 검정규준에 의할것.

3. 조작의 기구

소화기는 그 설치장치로부터 떼어내거나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이외에는 1동작으로 용이하고 확실하게 방사 할 수 있는 기구로 할것.

4. 소화약제량

- 1) 포소화기 - 80 l 이상
- 2) 증발성 액체 소화기 - 20 l 이상
- 3) 탄산가스 소화기 - 30 kg 이상
- 4) 분말 소화기 - 20 kg 이상

5. 접속금구

- 1)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팩킹으로 줄여져 있을것.
- 2) 내압시험시 세지않고 쉽게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할것.
- 3) 강압구멍이나 감압장치가 되어 있을것.

6. 발브

- 1) 내압시험시 세지 않고 쉽게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할것.
- 2) 핸들을 1/4 이하 회전으로 완전히 열릴수 있을것.
- 3) 핸들을 돌렸을 경우 분해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할것.

7. 호스

소화기에는 호스를 달도록 할것. 단 사염화탄소 소화기, 하로겐 소화기 로써 약제량이 1kg 이하인 것은 호스가 필요없다.

8. 노즐

- 1) 대형이외의 소화기의 노즐은 개폐식 혹은 교환식으로 하면 안된다.
-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 3) 개폐식, 교환식인 경우는 방사시 소화제가 새지않도록 할것.
- 4) 개폐식의 경우 3kg/cm² 압력으로 5분 동안 새지 않아야 한다.

9. 여과망

- 1) 포소화기 혹은 산알카리 소화기는 노즐 혹은 호스로 통하는 본체용기내의 개구부에 여과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 2) 여과망의 최대경은 노즐의 최소경의 3/4 이하로 할것.
- 3) 여과망의 정면적의 합계는 노즐 개구부의 최소단면적의 30배 이상으로 할것.

10. 액면표시

분말소화기 이외의 소화기에는 액면 표시를 반드시 할것.

11. 소화제의 방사향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한 경우 총진 소화제 용량의 90% (포소화기는 85%)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12. 안전변

- 1) 본체 용기내의 압력에 유효하게 감압 되도록 할것.
- 2) 함부로 분해 되거나 조정 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 3) 나사부는 KS 규정에 맞아야 하며 4 나사 이상 완전히 들어가도록 되어야 한다.
- 4) 봉판식은 분출구에 봉할수 있도록 할것.
- 5) 안전변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것.

13. 도색 및 표시

- 1) 소화기의 외면은 25% 이상을 적색 마감으로 하여야 한다.
- 2)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의 색으로 원형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보통 화재용은 백색
 - 나) 기름 화재용은 황색
 - 다) 전기 화재용은 청색

2. 완강기 시방서

1. 설치기준

-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매입 및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4)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5)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6)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속도 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러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벨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안된다.